

## 교감승진불가처분취소

소송종류	행정소송	법원명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 [1심]	사건유형	공무원신분
원고	□□□	피고	인천광역시교육감
판결선고일	2019. 3. 21.	비고	
사건개요	<p>원고는 2017. 3. 31. 2017학년도 중등학교 교감 승진후보자 서열 00순위로 통지받았으나, 2017. 7. 18. 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 기준(중등)에 따라 교감 승진임용에 관하여 4대 비위를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과거의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2018. 2. 1.자로 교감승진 불가 통보를 받았음. 이러한 피고의 처분은 이미 원고에 대한 교감 자격에 관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는 완성되었으므로 개정된 인사관리기준을 원고에게 적용하는 것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위법하며, 교육부의 인사기준에도 위배되며, 타 교육청에도 규정이 없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말소된 징계(4대 비위) 처분을 이유로 교장 승진을 영구 배제한 교육부 지침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 침해라며 개선 권고한 것을 이유로 들어 2018. 7. 25.자로 소를 제기함.</p>		
주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li> <li>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li> </ol>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1. 원고에게 한 교감승진불가처분을 취소한다.		
판결이유	<p>○ 피고의 교감 승진임용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을 비추어 보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고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교감 승진임용에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한 심사와 평가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결코 가벼운 비위는 아님.</li> <li>- 원고에 대한 교감 승진임용심사에 있어서 비교적 가까운 과거에 있었던 <b>향응 수수의 비위인 이 사건 비위행위를 고려사유로 삼을 수 있음.</b></li> <li>- 이 사건 기준은 피고가 교장 및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를 진행하여 승진임용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u>그 심사에 관한 내부기준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님.</u></li> </ul>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